

'19년 11-12월 주요국 지재권 동향

《 주요 내용 》

I. 유럽 p.2-3

- EUIPO 이사회 「EUIPO 전략계획 2025」 승인 및 발표
 - ▶ “IP Value for Business and Citizens in Europe”을 비전으로, 3개의 전략목표 및 세부목표를 채택
- 「EU 2013-2017 지재권 집행 보고서」 발표
 - ▶ EU 국경 및 회원국 국내시장에서 위조품 압류 실적 최초 발표
- (브렉시트 관련) 독일 헌재에 계류 중인 통합특허법원 헌법소원사건 결정시기 관련 동향
 - ▶ 담당 주심 재판관, 2년 넘게 지속된 동 사건의 결정 시점('20년 초)에 대해 최초로 언급
- EU-중국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
 - ▶ 양측 각각 100개의 지리적표시 리스트를 교환하여 상호 보호기로 합의

II. 일본 p.4-5

- JPO, 중동 국가와의 지재권 협력 강화 추진
 - ▶ 도쿄에서 중동 6개국(바레인, 이집트, 사우디 등)과 고위급 회담 개최(10.23, 10.28-29)
- RCEP 정상회의 공동성명 관련 일본 스가 관방장관 등 언론 보도
 - ▶ 日, 인도가 빠진 합의는 인정x, '20년 16개국 전원 타결을 위해 인도의 참여 촉구를 지속할 예정
- 일본의 특허권 회복제도
 - * 「특허법」 제112조의2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특허료 추납에 의해 특허권 회복 가능

III. 중국 p.6-7

- 중국 특허심사지침 추가 개정 현황
 - ▶ IoT, 블록체인 등 신기술/산업 관련 특허심사기준을 추가한 특허심사지침 개정(안) 공개
- 중공중앙·국무원 판공청 '지재권 보호 강화 의견' 발표
 - ▶ '22년까지 빈번한 침해발생, 권리 침해입증의 어려움, 낮은 배상금 등 문제를 개선 등을 목표
- 웨강아오대만구 지재권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 발표
 - ▶ 광저우 황푸구 및 개발구에서 지식재산권국제협동혁신연구원 등 IP관련 센터 5개소 건립 추진
- 시장감독관리 총국*, 「시장감독관리 민원 및 신고처리 임시방법」 시행
 - * 지재권 단속 업무도 수행, 민원 제기를 통해 악의적 상표 출원 등 분쟁을 해결

IV. 미국 p.8

- USPTO 표준필수특허 구제에 대한 신규 정책교시 발표
 - ▶ 표준필수특허 침해시 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금지명령 등 모든 구제방법 사용을 지지
- 뉴욕 IP-Desk, 보스턴 지식재산 상담회 개최(11.12-11.13, 보스턴 캠브리지)

※ 동 자료는 주요국 전문, 공식 사이트,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, 특허청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. 또한, 자세한 사항은 주요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

I. 유럽

□ EUIPO 이사회 「EUIPO 전략계획 2025」 승인 및 발표

- EUIPO는 11월말 개최된 EUIPO 이사회 및 예산위원회에서 '유럽의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IP 가치를 전달'을 비전으로 차기 전략계획 2025에 대해 승인했다고 발표
- 同 전략은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전략계획의 큰 틀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

《「EUIPO 전략계획 2025」의 주요내용》

- √ **비전** 유럽의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IP가치를 전달
- √ **미션** 탁월한 IP허브로서 EUIPO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·발전시켜, EU의 경쟁력, 혁신 및 창의성을 지원함으로써,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강한 IP시스템, 효율적인 IP집행, 글로벌·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IP 인식 제고에 기여
- √ **전략목표**
 - ① 역내시장을 위해 상호연결되고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IP 시스템
 - (①-1) 사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톨과 관행의 조화
 - (①-2) 권리자와 사회 보호를 위한 IP집행 강화
 - (①-3) IP 지식허브 구축
 - ② 고객중심의 서비스 강화
 - (②-1) 개선된 사용자 경험, 품질 및 효율성
 - (②-2)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신규 서비스
 - (②-3) 중소기업을 위한 IP 서비스
 - ③ 역동적인 조직관리와 혁신적인 업무환경 구축
 - (③-1) 상시 학습 및 지속적인 직원 참여
 - (③-2) 디지털 시대로의 진화
 - (③-3) 미래의 지속가능한 직무환경 조성

□ 「EU 2013-2017 지재권 집행 보고서」 발표

- EUIPO의 유럽지재권침해감시기구(European Observatory on the Infringement of IPR)는 EU 국경 및 회원국 국내시장에서 위조품 압류 실적을 토대로 「IPR 집행 관련 보고서」를 처음으로 발표
- 2013-2017에 압류된 위조 및 모조품은 총 4억 38백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, 시가 총액은 약 120억 유로로 추정
- 압류실적인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전체 압류건수의 54%, 가액의 60%를 차지 하였으며, 주요 압류물품으로는 의류 악세서리, 장난감, CD/DVD, 담배 등이 해당

□ (브렉시트 관련) 독일 헌재에 계류 중인 통합특허법원 헌법소원사건 결정 시기 관련 동향

- *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대해 독일헌법 위배 등을 이유로 일반인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('17.4)되었고, 현재 제3자(독일연방변호사회, 독일지재권보호협회 등)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계류 중
- 독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"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법안"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피터 휴베르가 IP전문업체인 「Managing IP」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초 (2020년) 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최초로 언급(11.20)
- 또한, 휴베르 재판관은 독일헌재가 브렉시트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부인하고 "유럽 안정성에 대한 메커니즘"과 같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고 설명

《EU 통합특허법원 관련 참고자료》

√ EU 통합특허법원협정(UPCA) 개요

- 유럽 내에 중복 재판 등으로 인한 고비용·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 전역에 단일특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"EU 통합특허법원" 설립을 추진
- (발효요건) 필수 비준당사국 3개국(독일, 영국, 프랑스-완료) 포함 13개국 비준 완료시
- (영국측 입장) 영국은 브렉시트 백서('18.7) 등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단일특허시스템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개진
- * 통합특허법원제도가 브렉시트 이행 종료 전에 시행되는 경우, 영국의 잔류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 중

√ EU 통합특허법원협정(UPCA) 진행 현황

- '12년 EU 이사회가 승인하여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
- '16년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
- 현재 UPCA는 프랑스, 오스트리아 등 총 15개국에 의해 비준되었고, 영국·독일의 비준 완료시 발효 요건이 충족될 예정이나, 필수 비준당사국인 독일이 'UPCA 비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'이 진행되어, 결과에 따라 UPCA의 비준도 추진될 예정
- * (PPA) UPCA 설립 후 본격적인 업무 개시 준비하기 위한 파일럿 단계를 운영하는 규정에 관한 의정서, (PPI) UPCA 구성조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권과 면책권을 부여

□ EU-중국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

- '19.11.6 EU와 중국은 '양측의 100개의 지리적표시 리스트*'를 상호 보호'하기로 하는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향후 EU측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비준 등 절차 필요
- * EU는 페타 치즈, 아이리쉬 위스키, 뮌헨 맥주 등, 중국은 우위한 녹차, 판진 쌀, 안지 보이차 등

II. 일본

□ JPO, 중동 국가와의 지재산권 협력 강화 추진

-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청(SAIP)과 양해각서 체결(10.23, 도쿄)
 - JPO-SAIP(마츠나가 청장-압둘라지즈 청장)는 10.23 도쿄에서 청장회담을 통해 PPH 심사협력과 데이터 교환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, 향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함

- 일본-아랍 특허청 간의 양자회의 개최(10.28-10.29, 도쿄)
 - JPO 마츠나가 특허청장은 바레인, 이집트, 쿠웨이트, 모로코, UAE 및 사우디 6개국과 경제·사회·문화 발전을 위한 "IP 시스템 활용에 관한 고위급회의"를 통해 IoT,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대의 IP이용 극대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,
 - 고위급 회의 이후 바레인, 이집트, 쿠웨이트, 모로코 및 UAE 5개국의 고위급과 양자 회담을 통해 IP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

□ RCEP(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정상회의 공동성명 관련 일본 스가 관방장관 등 언론 보도

- * 한중일 및 아세안 등 16개국은 11.4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, RCEP 연내 타결을 목표했으나, 11.4 인도가 RCEP 불참을 선언

- 인도의 RCEP 불참에 대해 日 스가 관방장관 및 모테기 외무대신은 기자회견을 통해 "일본은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2020년 RCEP 협정 서명을 위해 계속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"이라고 언급
 -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RCEP 정상회의(11.4)를 통해 공동성명 후 협정문*을 타결하였으나, 일본은 인도가 빠진 합의는 인정하지 않고 15개국 간 선행 서명과 지속적인 인도 참여 촉구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

- * 협정문에는 원산지 표시기준, 전자상거래, 지식재산권, 정부조달, 중소기업, 통관 등 20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, 상세 내용은 공개전

《RCEP 관련 참고자료》

√ 추진 현황

- '13.5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로 약 7년 간 협상을 진행
-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RCEP 정상회의(11.4)에서 불참을 선언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공동성명 후 협정문 타결하고, 모두 서명

√ 체결 효과

- RCEP은 세계 총생산(GDP)의 1/3, 세계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역내 교역 및 투자기반을 확보

√ 주요국 입장

- (인도) 인도의 국내경제 둔화,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등을 우려하여 참여를 유보
- (중국) 미중무역마찰 장기화로 인해 무역 확대를 위해 인도가 탈퇴하더라도 RCEP의 조기 타결을 지지(시진핑 주석 국제수입박람회 중 언급, 11.5)

□ 일본의 특허권 회복제도

- JPO는 「특허법」 제112조의2(특허료의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)으로 특허료 및 할증 특허료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해 그 특허료 및 할증 특허료를 추납하는 것을 허용 중
- 이를 구체화하는 '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'를 제공하고 있으며, 계획적인 입원, 신사옥 건설을 위한 구 사옥의 해체, 계획적인 정전 등 기간 도과의 원인이 예측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서 인정하지 않음
-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구제 절차 기간 내에 소정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수속을 진행함과 동시에 수속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기재한 회복이유서에 제출해야함

III. 중국

□ 중국 특허심사지침 추가 개정 현황

- 중국 국가지식산업국은 최근 개정된 특허심사지침을 시행(11.1)한 데에 이어, 인공지능, 블록체인, 영업방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산업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특허심사기준을 추가한 특허심사지침 개정초안을 발표하고, 사회 공중의 의견수렴을 추진

《주요 개정내용 발췌》

- √ 개정 초안은 제2부분 제9장에 제6절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결부시켜 이러한 유형의 출원에 대해 보호객체, 신규성과 진보성, 특허청구항과 명세서 작성에 대해 명확히 규정
 - (1) 특허심사 중 기술 특징과 알고리즘 특징, 영업방법 특징을 단순하게 분리하지 말 것
 - (2)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경우, 특허법 제25조에 의거 배제하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
 - (3) 특허법제2조 심사기준 확립
 - * 장별로 기술문제, 기술수단, 기술효과의 '3요소'를 통용하는 판단방법 하에 심사기준을 한층 더 세분화
 - (4) 기술특징과 기능적으로 상호 지원하고 상호작용관계가 존재하는 알고리즘 특징 및 영업방법 특징이 진보성에 미치는 기술적 기여를 고려
 - (5) 보호객체와 진보성에 관한 심사 성공 및 실패 사례 10건 추가
 - (6) 명세서 및 특허청구항 작성 기준 세분화

□ 중공중앙·국무원 판공청 '지재권 보호 강화 의견' 발표

-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"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"을 발표(11.24), 동 의견은 법률, 행정, 경제, 기술, 사회 운영을 통해 지재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완성함으로써 중국의 지재권 보호역량과 수준 향상이 목표
 - △'22년까지 빈번한 침해발생, 권리 침해입증의 어려움, 낮은 배상금 등 문제를 개선하고, △'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제고, 보호체계 완비, 지재권 제도 기반 혁신 장려 등 목표를 제시

□ 웨강아오대만구 지재권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 발표

- 중국 상무부, 과학기술부, 국가지식산업국, 중국과학원 등을 주최로 11.13-11.17 광둥성 선전시에서 「2019 중국 하이테크기술 성과거래회」를 개최,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"웨강아오대만구 지식재산권 운영활성화 프로젝트"를 발표

- 광저우 황푸구 및 개발구에서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: ①광저우 지식재산권국제협동 혁신연구원, ②지식재산권 빅데이터활용기지, ③마카오과학기술대학교 실천교육기지, ④전력신에너지산업 지식산권운영센터, ⑤웨강아오대만구 지식재산권 조정센터 건립

□ 시장감독관리총국, 「시장감독관리 민원 및 신고처리 임시방법」 시행

-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총국이 민원 해결 요청을 받거나,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한 「시장감독관리 민원 및 신고처리 임시방법」을 2020.1.1.부터 시행할 예정
 - * 中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재권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, 민원 제기를 통해 악의적 상표 출원 등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
- (민원) 소비자가 생활소비수요를 위해 상품을 구입/사용하거나 서비스 받는 데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
 - (처리관할) 민원의 대상이 된 자는 실제 영업지역 또는 주소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 부서에서 처리
 - (민원수리) 민원 접수일로부터 "7일"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 고지
- * 타 조정기관이 동일한 분쟁을 이미 수리/처리한 경우,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, 권리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나 하는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된 경우, 민원 제기시 제공해야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않는 등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음
 - (민원조정)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며, 협상에 의해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
- (신고) 자연인·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서에게 사업자의 시장감독관리 법률·법규·규정 위반 혐의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

IV. 미국

□ USPTO 표준필수특허 구제에 대한 신규 정책교서* 발표

- *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-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/RAND Commitments
- ** (F/RAND Commitments)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때, 특허권자가 비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
- USPTO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(NIST), 법무부 반독점국(DOJ)이 합동으로 표준필수특허 (SEP, Standard-essential patents) 구제에 대한 정책교서를 발표(12.19)
 - 주요 내용으로 표준필수특허도 다른 특허와 다르지 않게 취급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, 사건의 사실에 따라 금지명령 등 모든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, 미국 특허법이 표준 기반의 기술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장려·보호하기 위해 교정되도록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음
 - * 정책교서 본문 발췌 “특허권자의 F/RAND Commitments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된 요인이지만, 어떠한 특정한 시정방안을 금지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”
- 이안쿠 USPTO 청장은, 이번 정책교서는 표준필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이 일부 제한한다고 잘못 해석되었던 '13년에 발표된 표준필수특허에 구제에 관한 정책교서*를 대체하며, 기술개발과 표준기반의 산업성장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
- * USPTO와 DOJ가 합동으로 발표한 정책교서로서, 표준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금지명령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기재

□ 뉴욕 IP-Desk, 보스턴 지식재산 상담회 개최

- 뉴욕 IP-Desk는 미국 최대의 바이오/제약 클러스터 지역인 보스턴(캠브리지)에서 11.12-11.13 2일간 한국 중소기업의 지재산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걸쳐 지식재산 상담회를 개최
- 인트인(INTIN) 등 보스턴 진출 희망 스타트업 8개사 및 녹십자 등 보스턴 진출 한국 기업 4개사 등 참석